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$\left[\begin{smallmatrix} 2003. & 12. & 15 \\ \text{조례} & \text{제6호} \end{smallmatrix} \right]$

개정 2004. 3. 5 조례 제 108호 개정 2005. 10. 19 조례 제 172호 개정 2006. 8. 24 조례 제 202호 개정 2007. 5. 11 조례 제 233호 개정 2008. 1.11 조례 제 273호 개정 2008. 12. 26 조례 제 313호 일부개정 2011. 10. 14 조례 제 393호 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68호 전부개정 2015. 11. 20 조례 제 642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6. 12. 23 조례 제 724호 일부개정 2017. 3. 31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17. 11. 24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4호 일부개정 2019. 12. 26 조례 제 906호 일부개정 2020. 12. 18 조례 제 949호 일부개정 2021. 12. 28 조례 제1010호 전부개정 2022. 4.15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23. 7. 7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24. 8. 9 조례 제1175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〈개정 2024. 8. 9〉
 - 1.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: 「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 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. 다만,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2. 여비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〈개정 2023. 7. 7〉

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 〈신설 2023. 7. 7〉
-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「증평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-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- 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-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,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 〈신설 2023. 7. 7〉
- 제4조(여비의 정산과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)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, 가산 징수 등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8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4. 8. 9]

부칙(2022. 4. 15 조례 제1029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7. 7 조례 제109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8. 9 조례 제117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